

방화사고 (放火事故) 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대응방안



김 영 옥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1 머리말

범세계적으로 방화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방화는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은 방화를 단순히 재산상의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누군가의 재산이 화재로 파괴되었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방화는 폭력범죄이다. 방화범죄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방화는 고립된 범죄가 아니며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주택가나 차량 등의 연쇄방화로 가끔씩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996년도에 우리 나라에서는 2,577건의 방화화재가 발생하여 전체화재(28,665건)의 8.9%에 불과하였다(표 1 참조). 그러나 모든 사회현상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IMF체제 이후 경제불황과 사회불안으로 우리 나라도 곧 선진외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보험제도에 있어서도 보험의 효용은 사적인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자본효율을 높여 기업심을 장려하는 한편 저축심의 양양과 위협의 감소 및 손해의 미연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보험제도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도박보험의 유발과 보험사기행위, 보험목적물에 대한 태만으로 인한 보험의 증가 등 그 폐해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에 와서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고 남용하려는 보험범죄행위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행위가 증대되고 확산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이것이 경영수지

[표 1] 원인별 화재발생 상황(96년대비)

(단위 : %)

구 분	'97년 발생 건수(A)	'96년 발생 건수(B)	증가율[(A)- (B)]/(B)×100
총 계	29,472(100)	28,665(100)	2.8
전 기	10,075(34.2)	10,007(34.9)	0.7
남 배	3,626(12.3)	3,496(12.1)	3.7
방 화	2,655(9.0)	2,577(8.9)	3.0
장 난	1,566(5.3)	1,783(6.2)	-12.2
불 티	1,757(6.0)	1,648(5.7)	6.6
가 스	847(2.9)	806(2.8)	5.0
유 류	530(1.8)	592(2.0)	-10.5
난 로	439(1.5)	487(1.6)	-9.8
아 궁 이	339(1.2)	398(1.3)	-14.8
성냥·양초	229(0.8)	236(0.8)	-2.9

자료 : 행정자치부 '97화재통계연보

에 영향을 미치고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재산을 위협한다면 보험제도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효용성 증대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험범죄 중 방화와 관련한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는 사안들에 대한 손해사정측면에서 부당하고 부정한 보험금 청구사례를 막는 사정기법에 대하여 모색하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방화의 특징

방화는 불을 지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고의적으로 발생한 화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방화는 영어로 arson, incendiarism 또는 malicious igni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방화는 다른 범죄나 화재와 비교하여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방화의 원인, 즉 방화의 동기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방화의 동기는 원한, 보복, 사기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밖에 흥미 목적으로 방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박물관에 방화한 어떤 사람은 환경 오염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방화했다고 한다. 이렇게 방화의 동기가 다양하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나.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수사의 기본은 지문이나 혈흔 등의 물적 증거를 찾는 데 있으나 방화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 모든 증거가 파괴되기 때문에 범인체포는 물론 체포된 범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 방화는 일반적으로 은폐된 공간에서 행해져 화재 발견이 늦고, 휘발유나 시너같은 인화성 물질이 촉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범위가 크다.

라. 재산을 대상으로 한 방화보다 인명에 대한 방화가 많고, 용도별로는 주택에 대한 방화가 많아 방

화의 주요 동기가 원한이나 보복 등 정신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마. 일반적으로 화재의 발생은 계절적인 측면에 좌우되고 있으나 방화화재는 그 발생이 비계절적, 비주기적이다.

3 방화의 동기

가. 원한·분노·복수

방화의 주요 동기이며, 전체 방화의 2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원한·분노·복수에 의한 방화는 인간관계의 분쟁에 의해서 일어난다. 연인·부부·친구·가족간의 싸움, 건물주와 임대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분쟁, 이웃간의 마찰, 오너와 경영자의 불화 등이 모든 것이 방화 동기의 근원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방화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나. 음주·약물 중독

술을 먹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사소한 일에 흥분하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화하는 경우로 방화 동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 정신문제

우울증, 도움 요청, 성격적 혼란, 정신질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부류의 방화자들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라. 경제적 이득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발생건수 측면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 방화가 미리 계획되고 일반적으로 촉진제가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물질적 손실을 초래한다. 방화의 대상이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차량 등에도 행해지고 있다.

마. 범죄 은폐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화가 종종 이용되고 있다. 횡령, 사기 위조, 세금 회피, 도난 등 범죄행위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살인, 강도행위를 화재로 위장하기 위하여 방화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화는 범죄자가 건물 안에 있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 은폐 방화는 주변 인물이거나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 방화광(pyromania)

불지르는 충동을 느끼는 방화광은 심리적 불안과 깊히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방화광의 단 한가지 동기는 불 및 불과 관련된 사건에서 일종의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다. 방화광은 거의 항상 화재 현장에 남아서 사고를 확인한다. 방화광은 화염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을 얻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경꾼들의 흥분과 소방관들의 진화 활동에서 만족을 얻기도 한다. 충동을 극복하지 못할 때 방화광은 적당한 대상물에 방화한다.

사. 선동·테러리즘

사회불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시위나 노사분규 등에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방화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아. 영웅심리

환경이 제한되어 있고 생활이 무미건조할 때 일어난다. 상관이나 자기 가족에게 자신을 증명시켜 영웅이 될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방화를 하고 방화행위에 의하여 영웅이 되고 나면 발각될 때까지 방화를 계속한다.

자. 방화파괴자(vandalism)

주요한 방화 동기의 하나이다. 반달리즘 방화의 대부분은 청소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반달리즘은 2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방화로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불량 청소년이고, 또 하나는 갱이나 동료집단의 반달리즘이다. 첫번째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은 반항이나 그밖에 어떤 상징성이 있는 대상물에 방화한다. 학교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 범주에 속한 청소년들은 갱이나 동료 집단의 인정과 승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방화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방화자들은 감지되지 않는 장소,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물체에 불을 지른다.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건물, 빈차, 숲속이나 들뜰 등이 이들 방화자의 표적이 된다.

4 방화사고의 통계

지난 5년(93~97)간 방화피해를 분석해 보면 방화건수에 있어서는 매년 연평균 1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97년도에는 '93년도보다 59%, '96년도 보다는 3%가 증가하였다. 사망자는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97년도에는 '93년대비 8.4%가 증가하였고, '96년도 대비 8.7%가 줄어들었다. 부상자는 매년 연평균 14.4%가 증가했으며 '97년도에는 '93년도와 대비하면 63.9%가 증가하였고, '96년도와는 차이가 없었다. 지난 5년간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는 매년 연평균 26.6%가 증가하였으며 '97년도에는 '93년도 대비 139.1%, '96년도 대비 23.7%가 증가하였다.(표 2 참조)

지난 5년(93~97)간 방화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방화건수에 있어서는 매년 연평균 1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원인별로는 가정불화에 의한 방화가 가장 많았고, 매년 연평균 9.7%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97년도에는 '93년도와 비교하면 38.5%, '96년도와 비교하면 2.2%가 증가하였다.

다음이 비관자살에 의한 방화로 매년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26건

[표 2] 지난 5년간 방화 피해

구분 \ 연도	'93	'94	'95	'96	'97	증가율(%)
건수	1,670	1,824	2,245	2,577	2,655	12.5
사망	107	105	156	127	116	4.9
부상	158	208	271	259	259	14.4
재산피해 (백 만 원)	3,056	4,952	6,241	5,905	7,306	26.6

자료 : 행정자치부 '97화재통계연보

[표 3] 지난 5년간 방화 원인별 건수

구분 \ 연도	'93	'94	'95	'96	'97	증가율(%)
계	1,670	1,824	2,245	2,577	2,655	12.5
가정불화	304	409	457	412	421	9.7
비관자살	236	173	241	212	226	1.8
정신이상	107	70	116	156	176	19.6
싸움	206	191	224	211	121	-9.6
주벽	116	110	124	112	132	3.9
기타	701	871	1,083	1,474	1,589	23.1

자료 : 행정자치부 '97화재통계연보

이 발생하여 '93년도와 비교하면 4.2%가 감소하였으며 '96년도와 비교하면 6.6%가 증가하였다.

다음이 정신이상자에 의한 방화로 매년 연평균 1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97년도에는 '93년도보다 64.4%가 증가하였고, '96년도와 비교하면 12.8%가 증가하였다. 싸움에 의한 방화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방화원인 중 유일하게 연평균 9.6% 비율로 줄어들었는데 '97년도에는 121건이 발생하여 '93년 대비 41.3%, '96년 대비 42.6%가 줄어들었으며, 주벽에 의한 방화도 증가 추세에 있다.(표 3 참조)

'97년도 방화는 2,655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9%를 차지하였다. 차량화재가 전체 방화의 38.2%(1,016건)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전체 차량화재의 18.2%를 차지하였다. 다음이 주택·아파트 방화로 전체 방화건수의 27.7%(735건)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주택·아파트화재의 9.1%를 차지하였

다. 점포에서의 방화가 176건으로 전체 방화건수의 6.6%, 전체 점포화재의 10%를 차지하였다. 음식점에서는 105건의 방화가 발생하여 전체 방화건수의 4%, 전체 음식점화재의 6.2%를 차지하였다. 방화가 많은 장소별로 보면 차량, 점포, 주택·아파트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5 방화사고에 대한 손해조사

Michael F. Dennett는 그의 저서 「Fire Investigation」에서 방화(Arson)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데에는 화재원인 제공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 및 방법이 있겠지만 사정인(Investigator)의 관점에서 다음 여섯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즉, 첫째로 금전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

[표 4] 장소별 방화 발생건수('97)

(단위: %)

구 분	총 화재건수(A)	방화건수(B)	점유율(B/A×100)
계	29,472(100)	2,655(100)	9.0
주택·아파트	8,021(27.2)	735(27.7)	9.1
차량	5,606(19.0)	1,016(38.2)	18.2
공장	3,663(12.4)	82(3.1)	2.2
점포	1,756(6.0)	176(6.6)	10.0
음식점	1,701(5.8)	105(4.0)	6.2
창고	809(2.7)	32(1.2)	4.0
사업장	644(2.2)	40(1.5)	6.2
호텔·여관	535(1.8)	36(1.4)	6.7
학교	174(0.6)	9(0.3)	5.2
시상	45(0.2)	4(0.2)	8.9

자료: 행정자치부 '97화재통계연보

른다는 것이다. 방화범(Arsonist)은 다음 4가지의 분명한 수단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려고 시도한다.

- ① 방화범 자신이 발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화재사실과 무관하게 Alibi(현장부재증명)가 성립되도록 시간활용(Timing Devices)을 철저히 한다.
- ② 화재현장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재료를 사용하여 화재의 흔적을 남겨둔다.
- ③ 가능한 한 오랫동안 화재의 발견을 지연시키도록 노력한다. 즉,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지 않는 곳이나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을 택한다.
- ④ 방화는 의도적인 화재로서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우연적인 화재인 것으로 위장한다.

그러므로 사정인은 모든 물적증거를 정확하게 찾아 방화의 동기를 털어놓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화의 동기로는 가령 금전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경영이 어렵거나 파산위기에 있을 때 또는 시설물 기계 상품의 노후화 및 새로운 기술개발의 기회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보유재산의 상태가 주위환경에 뒤떨어져 정당한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와 동산에 있어서는 수리할 여유가 없거나 특수 또는 외국 Model이 너무 빨리 감가되거나 기대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 방화의 목적은 범죄의 은닉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현행범이 자기의 개인적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문을 지우기 위하여 화재를 일으키고 강제침입의 흔적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은닉에 대한 화재의 또다른 형태는 피고용인이 거짓 기록·회계장부·소액현금증빙 등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를 때 발견시 불일치가 두려워 문제가 되는 증빙을 소각시켜 버린다.

셋째로 방화는 파괴 및 반항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인간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몇 가지 이유를 보면 대인관계나 조직 내에서의 의견 불일치와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경고 또는 거절되었을 때 및 고용이 종료되었을 때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방화범의 입장에서 보면 순간적인 분노가 될 것이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현장에서 불을 지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넷째로 방화는 영웅심의 발로로 표출된다. 어떤 집단이나 환경이 개인적 활동범위가 제한적일 때 영웅신드롬(중후군)으로 나타난다. 흔히 이러한 경우 화재발생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다만 영웅으로 발견되기를 원할 뿐이다. 그래서 일단 영웅이 되면 방화범은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고 대개의 경우 그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되거나 그 충격이 완화될 때

까지 계속된다.

다섯째, 정신적 이상자가 자기의 필요충족을 위해서도 방화가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 특히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화염을 볼 때 어떤 해방된 기분을 갖는다. 불난 장면을 보는 동안 이상하게 흥분하는 사람의 그 배경을 보면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재발생장소 가까이에서 빈둥거리거나 진화시에 화재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의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섯째로 방화는 지루함 또는 권태를 달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대개 반복적인 일이 많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자극제를 찾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공장생산 Line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재를 일으키게 하여 기계적 손상을 가져오게 한다.

6 방화사건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대응방안

손해사정인의 임무는 이러한 부정직한 보험금 지급을 억제하고 통제하는데 있다. 그러한 임무수행을 위하여는 의심스러운 보험사고 건을 조사하게 되고 보험계약의 숙지와 손해조사방법 및 보험사기에 적용할 법률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야 한다.

즉 손해사정인은 보험자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이행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의무를 분명하게 알도록 한다. 방화의 입증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하여는 손해사정인은 다음 3가지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첫째, 방화의 발화원(Incendiary Origin)을 찾아내는 것이다. 물적 증거로서 의도적 화재로 볼 수 있는 것은 복수의 장소에서 화재가 다발한 경우나 높은 가연성 화학물질이 현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타기 쉬운 신문지나 냅마 등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흩어져 있을 때 이러한 사실들의 모든 것이 방화라고 보이면 일단계는 성공한 것이다.

둘째로 발화원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방화의 항변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화의 동기를 발견하여야 한다. 방화의 일반적 동기는 보험에 있어서는 금전적 이득에 있다.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보험자는 현재 건물보다 보험금을 받아 피보험자가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은 전문회계사의 도움이 요구되고 피보험자의 장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금전적 동기는 언제나 쉽게 밝혀지지 아니한다. 대개의 경우 손해사정인들은 업무용으로 통상 사용하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견고한 것으로서 소유주에 의해서 저질러진 방화로는 결코 파괴되지 아니할 것으로 순수하게 믿고 있다. 소유주의 재정적 입장에서 현재의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와 보험금을 받아냈을 때와를 비교해 본다. 이러한 결정은 기업의 수익성과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알게 된다.

셋째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는 대리점이 화재가 발생하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화재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화재가 나기 바로 전에 현장부근에서 배회하고 있었다는 증명은 방화의 강력한 상황증거가 된다. 비록 피보험자의 알리바이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방화는 시간사용계획(Timing Devices)을 보여 줌으로써 확인될 수 있고 피보험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고의로 의심이 가는 보험금 사기목적의 방화인 경우에는 사고원인 조사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보험회사는 법적 수사권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경찰·소방당국과 밀접한 연락으로 수사의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인(Adjuster)은 때로는 불을 지른 방화범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무고죄로 고발당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수사의뢰에 소극적이 되

는 경우도 있고 범행현장지역의 경찰관은 방화범과 상호 유착하여 무혐의로 방면시킬 소지도 생길 수 있다.

앞으로 손해사정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전문분야에 있어서 보험회사, 특히 손해사정인이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확립이 필요하며, 손해사정회사에서도 전직경찰관 중심의 사립탐정인을 많이 확보하여야 될 줄 안다.

7 맺는 말

일반적으로 보험범죄자들은 계약사정업무나 위험선택업무 그리고 손해사정 및 사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보험회사를 찾아서 범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계약심사업무, 위험선택업무, 그리고 손해사정업무를 까다롭고 철저하게 하면 그들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재보험분야에서 도덕적 위험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의 여부
- ② 피보험자의 재정상태(사업부진, 금융빚박, 세금체납 등)
- ③ 과다재고 여부(사장상품의 누중)
- ④ 불량한 판매상황
- ⑤ 집세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
- ⑥ 휴업중인 건물
- ⑦ 도시계획에 의하여 철거될 건물
- ⑧ 적자기업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
- ⑨ 화기가 없는 장소에서 출화
- ⑩ 과거 보험사기로 의문시되었던 경험을 가진 기업주

보험사기로서 방화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방법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연구되어야 할 줄 안다.

첫째,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으면 보험자가 즉시 대응하여 보험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둘째, 사정인이 현장조사를 하면 많은 잠재적 보험범죄자들은 놀란다. 따라서 현장답사를 할 경우 대부분의 보상요구가 현장답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게 나타난다.

셋째, 방화의 동기나 그 방법 등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여러 가지 증후를 기초로 하여 심증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상습적 보험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보험청약거부 및 보험금 지급상황에 대한 정보, 타보험회사에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 보험계약자의 성품, 습성, 정신상태, 신용도, 금전관계 등에 대한 정보 등 이러한 제반 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상호간에 교환하는 정보교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는 위험선택과정에 필요한 정보나 손해사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정인이 보험범죄에 대한 의문점을 발견하면 그는 그의 기본적 업무를 거의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상의 업무와 범죄증거를 제시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여 그 결과를 기대해 본다.

화재사고가 자연화인가 실화인가 방화인가를 조사하는 것은 화재보험의 손해사정에 있어서 첫 단계인 사실관계의 확인(Investigation)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한 사정담당자가 화재의 발화원을 찾아내고 방화의 동기와 기회를 현장증거로 입증했을 때 그 사정기술에 더욱 신뢰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업자는 이와 같은 보험사업자의 임무와 기능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제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권익 옹호와 보험제도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효용증대를 꾀함은 물론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영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㉞